

정치개혁시민연대

수 신 제 정당 대표실

발 신 정치개혁시민연대 (담당 : 참여연대 이선미 팀장, aw@pspd.org 02-725-7104)

제 목 정치개혁 분야 총선 공약 채택 등에 관한 요청

날 짜 2016. 3. 21. (별첨 포함 총 10 쪽)

공 문

정치개혁 분야 20대 총선 공약 채택 등에 관한 요청

.....

1. 안녕하십니까?
2. 정치개혁시민연대는 17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발표하며 작년 8월 25일에 발족한 기구입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에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안고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개혁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윤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48개 정치개혁 개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황입니다.
4. 이에 정치개혁시민연대는 19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한 이들 48개 정치개혁 법안들(상세내역은 첨부자료 참조)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귀 정당이 나서거나 이 개정안을 20대 총선의 정치개혁 관련 공약으로 귀 정당이 채택하고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첨부한 정치개혁시민연대의 17개 정치개혁 요구안도 20대 총선에서 귀 당의 정치개혁 분야 공약에 반영할 것도 요청합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 별첨

1. 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2.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

정치개혁시민연대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의원 수 늘리고, 비례대표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

방향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지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최소 2:1이 넘지 않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함.

②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정수 기준 법제화

: 의원정수 최소 360명,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5천명 미만

- 국회의원 정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약 30년이 지났으나 300명을 넘지 못하고 거의 고정되어 있음. 그 사이에 행정부는 거대해지고, 인구도 거의 1천만명 정도 늘어났음. 그만큼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인구의 팽창과 사회의 변화발전에 맞추어 늘어나고 있는 국민적 기대와 요청에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있음.
- 국회 기능 충실화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며,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를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함.

정치개혁시민연대

-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 선거 때마다 국회에서 편의에 따라 정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국회의원 정수는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에 명시해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제헌의회 사례(의원 1인당 10만 명 대표)부터 외국 선진 의회의 사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1988년 총선의 경우에 해당하는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인구 규모에 적용하면 감안해보면 의원 정수는 360명이 도출됨
- 따라서 의원 정수는 최소 360명이며,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14만 5천명을 넘지 않도록 함.
- 단, 의원 정수 확대와 병행하여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 및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예산지출내역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100석 이상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놓여준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 는 획정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방향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너무 유리해 균형을 잃은 제도임. 또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정치개혁시민연대

세력 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⑤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각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⑦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 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바탕을 둔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⑧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⑨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

정치개혁시민연대

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⑩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출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해야 함.

방향 3.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⑪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⑫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및 투표시간 밤 9시까지 연장

-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민주 국가의 의무임. 선거 때마다 '투표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유권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확

정치개혁시민연대

인되고 있고,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 안팎에서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

- 투표율과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재자투표와 거소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하고 있어 투표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사전 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존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었던 주요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전투표소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해야 함.

⑬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⑭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⑮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⑯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정치개혁시민연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⑰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명단 (총 255개)

[강원(25)] 강릉경찰서 강릉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릉YMCA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속초경찰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경기(16)] (사)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남(23)]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찰서 거제YMCA 거창YMCA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양산YM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희망진해사람들

[광주(19)]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주시지부 광주시민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민주노동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광주

정치개혁시민연대

전남청년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주권행동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21C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대구(17)]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북구여성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19)]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홍사단대전지부

[부산(5)]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서울(20)]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례대표제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정치행동내가꿈꾸는나라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성연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홍사단 KYC

[울산(10)]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WCA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인천(14)]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사)건강과 나눔 (사)장애인자립선언 건강사회를 여는 치과의사회 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인천본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청년광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행복한마을만들기

[전남(24)]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나주사랑시민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순천YMCA 순천YWCA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KYC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SHR녹색

[전북(9)]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충남(27)]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YMCA 보령참여시민연대 복지세상

정치개혁시민연대

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예산홍성환경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KYC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재단 충
남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충북(27)]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
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
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
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홍사단 충북
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
친구들 충북여성살림연대 민변대전충청지부